

중개형ISA 핵심설명서



- 고객님의께서는 서비스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중개형ISA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이 설명서는 중개형ISA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설명서와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께서는 중개형ISA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사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77-2601)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bnkfn.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명	중개형ISA		
서비스의 내용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여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		
ISA유형별 구별되는 특징	중개형ISA 고객이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	신탁형ISA 고객이 투자종목과 수량을 직접 운용 지시	일임형ISA 고객투자성향에 따라 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상품 중 선택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부적격자 판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통보를 받은 계좌에 대해서는 추가 입금 및 매수가 제한되며, 이의신청이 해소된 이후 가입자격 부적격이 최종 확정되면 세제혜택의 소멸 혹은 추징, 계좌는 해지하여야 합니다. ■ 중도인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 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 인출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중도인출 시 중도 인출 한도는 재생성 되지 않으며 잔여 한도만큼만 입금 가능합니다. -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 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만기 자금 개인연금으로 이전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후 60일 이내, 만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본인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만기 후 60일 경과된 자금은 연금계좌로 이전 불가합니다. ■ 계좌 만기 시 보유 금융상품의 계속 운용을 원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만기일 전 만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유자산의 환매·매도 없이 계속 운용이 가능, 만기 연장 후 계약 만기 시점에 환매·매도 등으로 손익을 실현시킨 후 에는 과세특례를 부여하지만, 만기 연장 없이 만기일 이후에 환매·매도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시키게 된다면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개형ISA 핵심설명서



<p>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p>	<p>■ 중개형ISA 내 개별 상품의 위험등급은 각 상품의 위험등급에 따르며, 각 상품의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p>
<p>청약철회</p>	<p>■ 고객은 중개형ISA 내 편입된 금융상품 중 관련법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p>
<p>위법계약의 해지</p>	<p>■ 고객은 회사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 고객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p> <p>■ 고객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p>
<p>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p>	<p>■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nkfn.co.kr) 또는 고객센터(1577-2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p>

중개형ISA 설명서



이 설명서는 중개형ISA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자세한 설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개형약관 및 운용상품별 핵심·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근거하여 체결한 개인종합관리계좌의 명칭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여 손익통산 및 절세혜택(비과세+저율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서비스개요

구분	내용
서비스명	■ 중개형ISA
의무가입기간	■ 3년
계약기간	■ 3년이상(연단위)으로 지정,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전일까지 만기연장 가능
최소가입금액	■ 1원이상
편입가능 금융상품	■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ELS/DLS/ELB/DLB), ETF/ETN, RP, 리츠 등 ※ ISA내 상장주식을 통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편입 가능 ※ ISA를 통한 공모주 청약 가능 ※ 공모형 상품만 편입 가능
보수 / 수수료	■ 중개형ISA 계좌관리에 따른 보수는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편입 금융상품별 보수(판매보수 등)는 별도 부과됩니다. ※ 주식거래(ETF, ETN 등 포함)에 따른 거래세와 매매수수료는 징수됩니다. (과세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단, 편입 금융상품별 중도해약수수료는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좌에 편입되는 개별 상품에 대한 구조와 성격, 보수, 비용, 수수료, 조기·중도·만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개별 상품의 일반적·구체적 투자위험, 계열회사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등은 상품별 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입대상 유형별 주요 내용(근거법령 : 조특법 제91조의18, 129조의2,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4)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가입대상 (거주자에 한함)	■ 19세이상 ■ 15세~18세 근로소득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3개 과세기간 동안 1회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혜택분은 추징 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이하	■ 농어민(단, 서민형 소득기준 초과시 일반형 적용)
납입한도	■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단,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차감) ■ 연 납입한도 : 2천만원x[1+가입후 경과연수(경과연수가 4년이상인 경우 4년)] - 누적납입금액		
계약기간	■ 3년 이상(연단위)으로 고객이 지정하며 계약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만기연장 가능합니다.(단, 계약기간 연장 시 서민형 여부를 포함한 가입 가능여부 재확인)		
의무가입기간	3년		
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중개형ISA 설명서



<p>분리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한도 초과 소득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않음)
<p>손익통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익통산은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유형별(일반형 또는 서민형/농어민) 비과세한도 초과소득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적용합니다. ■ 각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은 계좌해지일까지 이연하여 합산합니다. ■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 시점의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합니다. ■ 과표대상 소득금액에 제비용(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차감 후, 주식매매차손(주식매매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최종 손실분)을 합산합니다. ■ 대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손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중도해지(단, 특별해지사유 제외)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하지 않습니다.(일반과세 처리)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 시 가입요건을 재검증하며, 가입시 서민형이었으나 연장시 일반형 요건으로 검증되는 경우 일반형 세제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가입시 일반형이었으나 연장시 서민형 요건일 경우 서민형 세제혜택 적용) ■ 의무가입기간 내에 중도해지 시(단,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만기 후 6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추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일부 제권리행사 시(유상청약 등) 납입한도 초과로 별도의 계좌로 처리한 경우 별도처리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p>특별해지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내에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2. 투자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투자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4. 가입자의 유의사항

구분	내용
<p>계약해지 및 원천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해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원칙 : 투자중개업자(BNK투자증권)는 계약해지일(이하 "손익통산시점")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계좌내 금융상품을 계약만기일로부터 즉시 환매·매도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실제 만기대금 지급은 만기일 이후 계좌 내 자산이 모두 환매·매도되는 시점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은 금융상품별 환매·매도 금액 입금일 또는 만기일 경과 후 30일 중 빠른 날로 부여됩니다. 4. 그 이후부터 투자자의 실제 계좌 해지일까지는 일반과세 처리하여 계좌해지일에 원천징수 합니다.(만기일까지는 세제혜택, 만기일 이후부터 실제 해지일까지는 일반과세)



중개형ISA 설명서

	<p>5. 가입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 해지 후 일반계좌로 전환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전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단,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계약의 잔존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까지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4. 투자중개업자는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자의 해지 의사(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인출)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5. 원천징수된 금액은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p>■ 납입원금 중도 인출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는 납입원금 이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허용되지만 가입일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 등 제비용 및 인출일 현재 예상되는 세금 상당액, 그리고 최소가입금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 나지 않습니다.
<p>가입자부적격자 관련 사항</p>	<p>■ 부적격 통보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청장이 가입자가 가입 또는 만기연장 당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는 지체없이(14일이내) 이 사실을 해당가입자에게 통보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일 또는 계약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2) 15세이상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 가입일 또는 계약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 2.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가입자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중개업자에게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p>■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중개업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통보를 받은 날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부적격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경과 후 국세청의 최종 수용여부를 수탁자가 통보를 받은 날에 해지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투자중개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며,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합니다.
<p>전전년도 소득증명서 유의사항</p>	<p>■ 가입자가 서민형 또는 농어민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 연도의 상반기 중에는 전전년도 소득 확인증명서로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합니다. 부적합한 서류제출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통보 받을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p>

중개형ISA 설명서



계좌이전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사로 ISA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ISA계좌의 수관이 가능해야 계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불일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만료 후 만기가 도래하는 재산(예: ELS 등)을 편입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에 환매·매도하지 않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환매·매도하지 못한 재산은 현금화가 여의치 않아 납입원금 및 이익금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후 현금화를 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형성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투자위험

구분	내용
원본손실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본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본의 손실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자산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회사의 파산, 채무불이행 등으로 원리금의 지급지연 및 전부 또는 일부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투자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등의 중도상환시 공정가액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금성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가 운용자산의 만기 이전에 환매·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 또는 상품 취급기관의 유동성 상황 등에 따라 현금화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투자시 투자수익률은 시장요인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불안, 통화와 금리, 신용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과거의 수익률과 이에 기초한 전망이 미래의 투자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6.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계좌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하고,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해지 등의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좌는 조세특례법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 ■ 상장주식 편입에 따른 주식 의결권 행사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 본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 본 계좌 내 예수금은 예탁금이용료 지급 대상입니다. ■ 투자자는 파생결합증권 등 만기가 있는 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의 만기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본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